

의안번호	2219130
의 퇴 인	박해철 의원
회 답 일	2026.6.24.
추 계 번호	26B27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14.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14호 신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 「소방시설공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무규정
2	안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제1항)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요청받은 설계자와 건설공사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다만,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설계자 또는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4항) 건설공사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 결과 안전보건대장 내용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개선을 지시하거나,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항 신설) 건설공사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적정성 확인을 거친 설계안 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제6항 신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적정성 검토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7항 신설)	
3	안 제67조의2 (안전관리 역량 확인) 신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항) 건설공사도급인은 확인 결과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역량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67조의3 (설계자의 산업 재해 예방 조 치) 신설	설계자는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제1항) 설계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5	안 제68조(안전 보건조정자)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1항 후단 신설) 안전보건조정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내용을 조정하거나, 안전 및 보건조치의 개선·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보건조정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2항 신설)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항 신설) 건설공사발주자나 건설공사도급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작업 시기·내용 조정 요청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선임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4항 신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항제3호)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2항·제3항·제4항, 제68조제2항·제4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 — 개정안은 설계자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를 직접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안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3	안 제67조의2(안전관리 역량 확인) 신설		
4	안 제67조의3(설계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신설	—	• 미대상 — 개정안은 설계자에게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나, 설계자¹⁾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 미대상 － 현행법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알리도록 하면서 안전보건조정자로 하여금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내용을 조정하거나, 안전 및 보건조치의 개선·변경을 요청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개정안은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보건조정자의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175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은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³⁾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 1)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설계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상세 사유

□ (안 제67조) 개정안은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의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 등임

- 개정안은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면서(제3항),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설계자 또는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제4항)
 - － 현행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⁴⁾, 개정안은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에 대해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
- 또한, 개정안은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는 설계자,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개선을 지시하거나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제5항),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검토를 거친 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미리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제6항),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검토 건수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조사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공사 비용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

2)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4)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 (안 제67조의2) 개정안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확인 결과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안전관리 역량 확인에 따른 평가 비용 등이 수반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⁵⁾에 따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안전관리 역량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안전관리 대상의 범위와 규모가 불확정적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사업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우며, 평가방법 및 내용 또한 구체화 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5)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